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851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

주무관	영유아지원팀장	영유아담당관
		02/08



## 2024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2024년 2월

영유아담당관

# 2024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조리원)의 휴가 및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 시 대체교사(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I

###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 추진방향

- 보육교직원의 보육 공백 시 대체인력 적기 지원을 통한 보육 공백 최소화
-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조리원)이 교육, 휴가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추진성과

- '23년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이 어린이집 보육 공백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3.6%으로 높았음

◆ 대체교사(조리원) 재근무 여부 : 의향 있음(84.6%), 의향 없음(15.4%)

#### ○ 대체교사 파견 실적

- 대체교사 채용 및 지원 실적

(2023.12월 기준)

구 분	인 원(명)			건 수(건)				지원일수 (일)
	목표	채용	달성률	목표	신청	지원	달성률	
대 체 교 사	478	454	95.0%	28,000	55,734 (49.5%)	27,519	98.3%	81,652
대 체 조리 원	25	23	92.0%	2,110	6,000 (42.3%)	2,539	120.3%	5,056

- 지원사유별 실적

(2023.12월 기준)

구분	계	연가	결혼	교육	아동 학대	질병	가족상	기타	유휴 지원
대 체 교 사	27,519 (100%)	21,498 (78.1%)	502 (1.8%)	1,989 (7.2%)	14 (0.1%)	1,334 (4.8%)	275 (1.0%)	512 (1.9%)	1,395 (5.1%)
대 체 조 리 원	2,539 (100%)	2,443 (96.2%)	1 (0.0%)	1 (0.0%)	0 (0.0%)	41 (1.6%)	4 (0.2%)	37 (1.5%)	12 (0.5%)

○ 대체교사 직접채용 실적

(2023.12월 기준)

구 분	어린이집(개소수)	지원건수(건)	지원일수(일)	비고
대 체 교 사	8,250	13,820	52,880	12개월 누적실적

○ 예산집행 : 20,523백만원(국비 4,976백만원 / 시비 15,547백만원)

- 대체교사 파견 13,256백만원, 대체교사 직접채용 6,510백만원, 대체조리원 757백만원

## II 지원계획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월 ~ 12월

○ 사업대상 : 대체교사(파견, 직접채용), 대체조리원(파견)

○ 사업내용 :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및 직접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 파 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지원

- 직접채용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목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파견 실적

- 대체교사(476명 채용, 28,000건 지원), 대체조리원(25명 채용, 2,500건 지원)

※ 채용인원은 '24년 예산, 지원건수는 '23년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산정

※ 23년 실적 : 대체교사(454명 채용, 27,519건 지원), 대체조리원(23명 채용, 2,539건 지원)

## □ 지원내용

구 분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지원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임면 보고된 조리원
지원사유	연가, 교육, 병가, 경조사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연가, 교육, 기태(아동학대 후속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일수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지원 사유에 따라 1~3일 지원
지원단가	파 견 : 월 2,401천원(월급제) 직접채용 : 일 93,690원(8시간 기준)	파 견 : 월 2,464,100원(월급제)
인건비 (파견) 세부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2,061천원/인 (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기준/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기본교통비(대체교사) : 월 100천원/인</li> <li>▶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li> <li>▶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조리원 급여 : 2,092,900원/인 (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기준/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4년 조리원 1호봉 적용</li> <li>▶ 기본교통비 : 월 100천원/인</li> <li>▶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li> </ul>

※ 붙임1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세부 지원기준

##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비고
지 원 단 가	대체 교사	파견	월 2,342천원 (급여 : 월 2,011천원/인)	월 2,401천원 (급여 : 월 2,061천원/인)	인건비 인상 (2.5%)
		직접 채용	일 91,410원(8시간 기준) ※ 4시간 기준 : 45,720원	일 93,690원(8시간 기준) ※ 4시간 기준 : 46,880원	인건비 인상 (2.5%)
	대체 조리원	파견	월 2,404,000원 (급여 : 월 2,012,400원/인)	월 2,464,100원 (급여 : 월 2,092,900원/인)	※ '24년 조리원 1호봉 적용

□ 사업예산 : 24,148백만원(대체교사 23,372백만원, 대체조리원 776백만원)

○ 대체교사 파견(14,945백만원), 대체교사 직접채용(8,427백만원), 대체조리원(776백만원)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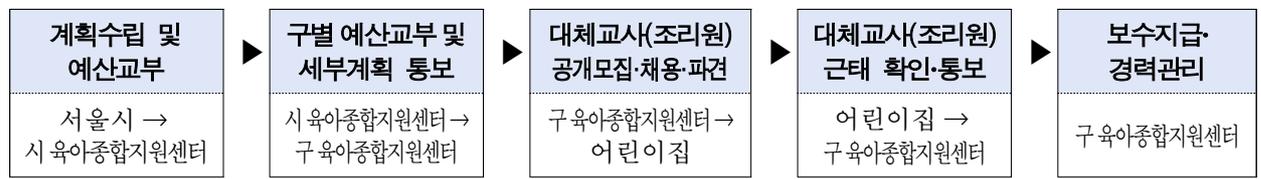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비	시비	보조비율
<b>합 계</b>	<b>24,148</b>	<b>6,038</b>	<b>18,110</b>	
(국비)대체교사	파 견 14,189 직접채용 8,427	2,838 3,200	11,351 5,227	20:80:0 30:49:21
(시비)대체교사	파 견 756		756	시비 100%
(시비)대체조리원	파 견 776		776	시비 100%

※ 어린이집 비담임 교사 지원은 (국비)대체교사 직접채용 예산으로 자치구에서 추진

### III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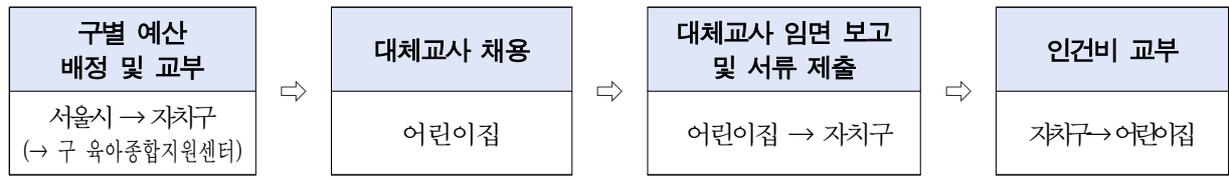
####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지원

- 총괄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월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현황 서울시에 제출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 사업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교육, 홍보, 자치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업무 운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공개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 수행
    -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제 이외의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체결 가능
  - 월별 사업실적을 매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업무 운영 : 자치구 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제출
    -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시,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지원 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 반려시 대장에 반려 사유 기재)



### IV 향후계획

-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 분기별(또는 매월) 교부
- 자치구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현황 및 실적 관리(매월)

**대체교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대체교사 파견 지원단가** : 월 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2,06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기본교통비(대체교사)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li> <li>■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li> </ul>

※ 운영비(사업예산의 5%) 내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지원

구분	세부지원 내용
대체교사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 처우개선비(월25만원), 추가수당(월10만원, 채용인원 20인 이상 시), 정근수당(연2회, 10만원~20만원,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급식수당(월14만원), 명절수당(연2회, 10만원)</li> </ul>
대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수당(연2회, 10만원)</li> </ul>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일 93,690원(8시간 기준)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 비담임 교사 지원 >**

- 지원내용 : 대체교사와 보조·연장교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비담임교사 지원
- 지원기간 : '24.3월 ~ '25년.2월
- 지원단가 : 월 2,294천원
- ※ '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준수(비담임 교사는 대체교사 직접채용 예산으로 추진)

**근로조건**

- 대체교사 파견 :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 원칙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 지원)에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일수**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국·시비 대체교사 동일 적용

- 단, 시비 대체교사의 경우, 서울시 자체 보육 교직원 교육 시 우선 지원

※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필수교육 포함(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구분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 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모성보호	유산(~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5일)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5일)		

< 참고사항 >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초과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90일 출산 휴가 기간 중 마지막 30일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 급여가 지원되므로 대체교사 인건비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3년부터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적용, 보조 비율 시비79:구비21)

- **신청방법** : 1개월 단위, 전월에 사전 신청
  - 국비 대체교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시비 대체교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유휴인력 지원**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 신청방법 : 유선 신청(※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1	서울시 자체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재교육은 제외) <b>*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필수교육 포함(보육교사 겸임에 한함)</b>	최대 5일
2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다문화영유가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4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 이력 必	
5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6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대체조리원 파견 지원단가** : 월 2,464,100원, '24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세부지원 내용
인건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조리원 급여 : 월2,092,900원/인('24년 조리원 1호봉 적용,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기본교통비 : 월 100천원/인</li> <li>■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li> </ul>

- ※ 운영비(사업예산의 5%) 내 대체조리원 수당 지원 : 명절수당(연2회, 10만원)
- ※ 대체조리원 총괄관리자(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 적용

- **근로조건** :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자격조건**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험자 우대
  -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만 65세까지
  -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 (우선 지원)		
5	연가		
6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		
10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11	건강검진		1일

- ※ 조리원 퇴직으로 인한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시,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남은 시간은 조리실 위생점검 및 조리도구 소독 등 어린이집과 협의한 조리업무 등 지원(단, 4시간 이상 남은 경우 센터 복귀하여 교육 수강 및 업무평가지 작성 등)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전월 1일~10일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 신청**

□ **유휴인력 지원**

- 신청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취소, 지속적 홍보에도 신청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체조리원 유휴인력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운영상 유의사항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관리자 배치 : 지원사업 효율적 관리·운영
  - 시 센터 : 2명(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센터 : 자치구별 1명(대체교사 배정인원 30명당 관리자 1명 추가 채용 가능)
  - 관리자 역할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 등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에게 어린이집 근무 전 업무 인수인계서 사전 숙지 안내 및 근무내역 확인
- 긴급사유 지원에 대한 자치구 센터별 대체 교사 배정인력 내에 최소 1명 이상 배치 운영
  - 긴급사유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본인 질병(사고)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조리원) 유희인력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 권역별 자치구간 대체교사(조리원) 파견 지원 가능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 노원 강북	동작 관악 서초	강동 광진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종로 중구 용산	종랑 성북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 대체교사 사전확인증 관리
  - 어린이집(보육교사)에서 대체교사 신청 시 사전확인신청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파견 시 신청 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확인, 인건비 지원시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경력 및 근태관리
  - 임면 보고 받은 자치구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대체교사)
  - 대체교사(조리원)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고, 근무 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국비 보조사업(대체교사)은 '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준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전확인 신청서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청기간 :  
신청사유 :

위 신청사유에 따라 위 신청기간에 대체교사 인건비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성명 : (인)

수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 전 확 인 증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청기간 :  
신청사유 :

위 신청의 지원 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 (인)

<유의사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